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고 등 교 육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유은혜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AI·바이오헬스 등 첨단(신기술)분야와 다양한 계열의 학문을 융합·연계할 수 있는 인재양성이 필요함

특히, 개별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교원, 교육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상호 간 공유·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분야는 별도의 공동교육과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(안 제13조제3항 신설)
-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분야는 별도의 학점인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(안 제15조제2항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○○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,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.

제1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기존 “제2항”은 “제3항”, “제3항”은 “제4항”, “제4항”은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, 제1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) ① (생략) 1~4.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따른 각 학교별 학위의 수여는 법 제35조·제50조(법 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50조의2, 제50조의3, 제54조 및 제58조에 따른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 제15조(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) ① (생략). 다만, 제1호가목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제1호다목 및 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 <u><신 설></u> ② ~ ④ (생략)	제13조(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) ① (현행과 동일) ② (현행과 동일)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, <u>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.</u> 제15조(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, <u>제1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.</u> ③ ~ ⑤ (기존 ② ~ ④항과 동일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(고등교육정책과)	
연 락 처	(044) 203 - 6921